## 창원시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979

발의연월일: 2022. 2. 4.

발 의 자:전홍표·구점득·김상찬·김종대·노창섭·박남용

박성원・이우완・자상록・잔상락・최은하 의원

(11명)

## 1. 제안이유

농업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사업 지원 및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창원시 조례 제 호

## 창원시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 4.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 5.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 6. "신소득작물" 이란 아열대작물 또는 기후변화에 따라 재배 적지(適地)의 이동으로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작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농촌이 기후 위기 대응 및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고, 새로운 농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창원시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본방향
  - 2. 온실가스 감축 정책
  - 3. 추진 계획 및 전략
  - 4. 행정적 · 재정적 지원 방안
  - 5. 농촌 지역의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순환 공간 구축 방안
  - 6.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 제5조(사업 지원) 시장은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경영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 2. 신재생에너지 활용
  - 3. 질소질 비료 절감
  - 4. 농축산 부산물 활용
  - 5. 농업 · 에너지 관련 기관 자문
  - 6. 온실가스 감축 검증

- 7. 신소득작물 기술의 개발 보급
- 8.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홍보·교육) ① 시장은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하고, 농업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홍보와 교육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업 및 에너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8조(포상) 시장은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에 공적이 큰 개인, 기관 및 단체에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2020. 12. 8.>
  -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 4. "생산자단체" 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읍 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6. "농수산물" 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7. "식품"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9.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 마. 생태계의 보전
-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 10. 삭제 <2015. 6. 22.>
- 11. 삭제 <2015. 6. 22.>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농어업경영체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7., 2015. 1. 6., 2015. 6. 22., 2021. 8. 17.>

-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 인을 말하다.
-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 4.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 5. "어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6. "어업경영체" 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 7. "농어업경영체" 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 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을 말한다(다만,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토지와 시설의 분양은 제외한다).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약칭: 녹색성장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7. 30., 2017. 11. 28.>
  - 1. "저탄소" 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 2. "녹색성장" 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 3. "녹색기술" 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 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 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 4. "녹색산업"이란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 5.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 6.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 7.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 8.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
  - 9. "온실가스" 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 10. "온실가스 배출" 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 11. "지구온난화" 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축적되어 온실가스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지구 전체적으로 지표 및 대기의 온도가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 12. "기후변화" 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하다.
- 13. "자원순환"이란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자원순환을 말한다.
- 14.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 15. "에너지 자립도" 란 국내 총소비에너지량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등 국내 생산에너지량 및 우리나라가 국외에서 개발(지분 취득을 포함한다)한 에너지량을 합한 양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

-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 12. 15., 2015. 12. 22.>
  -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 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 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 람
  -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 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② 삭제 <2015. 12. 22.>
  -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제목개정 2015. 12. 22.]

##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끝.



## 창 원 시



수신 창원시의회의장

(경유)

#### 제목 의원발의 조례 제정 관련 검토의견서 송부(전홍표 의원)

- 1. 의회사무국-306(2022. 1. 10.)호와 관련입니다.
- 2. 의원발의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부서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 □ 조례 제정 개요

조 례 안	부 서 검 토 의 견	발 의 자
창 원 시 농 업·농 촌 온 실 가 스 감 축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관련법령 저촉여부 : 해당없음 ○ 기후 위기 등 환경 문제가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농업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봄.	전 홍 표 의 원

- 붙임 1. 부서검토보고서 1부.
  - 2. 의원발의안 1부.
  - 3. 비용추계서 1부.
  - 4. 관계법령 1부. 끝.

창 원 /



주무관 이고은 의회협력담당 **김정미** 정책기획관 **건**결 2022. 1. 25.

협조자

시행 정책기획관-497 (2022. 1. 25.) 접수 의회사무국-862 (2022. 1. 25.)

우 5143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정책기획관 (용호 / http://www.changwon.go.kr

전화번호 055-225-2264 팩스번호 055-225-4702 / goni07@korea.kr / 비공개(5)

## 요 약 서

# 『창원시 농업 · 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보고

## □ 조례안 개요

- 조례안명 : 「창원시 농업·농촌 온실가스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안」
- O 발 의 자 : 창원시 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의원
- 제안이유 : 최근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가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농업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 검토 내용

- O 상위법 저촉 여부 : 저촉사항 없음
- 다른 지자체 유사 조례 제정 현황 : 1개 지자체(광역 1)
- □ 종합의견: 조례제정 "찬성"

## 『창원시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보고

전흥표 의원 발의 예정인 『창원시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I 의원발의 조례제정 개요

##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22조
- O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

## □ 조례안 개요

- 조례안명 : 「창원시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상정시기 : 제11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 **발 의 자** : 창원시 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의원
- 제안이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최근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가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농업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Ⅲ 부서 검토내용

## □ 상위법 저촉 여부 : 저촉 사항 없음

####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 제22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

#### ○ 법령검토

- 본 조례안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에 위반되지 않으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최근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가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농업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 저촉도 없음.

## □ 소요예산

### ○ 지원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예산액	집행액
계	1,409,224	1,409,224
′18년	312,226	312,226
′19년	313,016	313,016
'20년	367,716	367,716
′21년	416,266	416,266

## ○ 재정 부담 사항 : 창원시 일반회계 재원으로 편성

## 이미 지원하고 있으므로 추가 재정부담 없음

- 비용추계 기간 : 2022년 ~ 2026년(5년간), 지원 예산 산출

## □ 다른 지자체 유사 조례 제정 현황 : 1개 지자체(광역 1)

구 분	자치단체명			
광역자치단체	전북			

## □ 주요 조문별 겸토의견

○ 원안과 동일 의견이므로 검토의견 없음

## Ⅲ 종합의견

- □ 상위법 저촉여부 : 해당없음
- □ 부서 의견: "찬성"
  - 본 조례안은 창원시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가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농업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적정하며, 필요함.
- 붙임 1. 의원발의 조례안 1부
  - 2. 비용추계서 1부
  - 3. 관계법령 1부. 끝.

## 붙임 2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창원시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5조

### 2.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최근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가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농업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종합계획 수립 및 온실가스 감축 세부목표 설정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축을 전제로함

##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الد الد	계	398,000	481,000	481,000	481,000	411,000
예 산 소요액	국비	181,000	181,000	181,000	181,000	181,000
조표력 (천원)	도비	8,000	12,000	12,000	12,000	12,000
(선턴)	시비	209,000	288,000	288,000	288,000	218,000

## 다. 재워조달방안

○ 기존 농업기술센터 사업을 기후변화대응 부서별 목표 설정하고. 공모사업을 준비하여 국비확보에 노력함.

## 3.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과장 김 종 핵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서	입	, , , , , , , , , , , , , , , , , , ,	<u> </u>				
서	출	398,000	481,000	481,000	481,000	411,000	2,252,000
축산업	변화 적응형 경쟁력 강화	89,000	102,000	102,000	102,000	102,000	497,000
,	적응형 농작물 생산기반	248,000	248,000	248,000	248,000	248,000	1,240,000
신작	마트농업 및 물관련교육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대응 역	변화 선제적 연구기반 확충	0	70,000	70,000	70,000	0	210,000
	형 도시농업 프로젝트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7	내원 조달	398,000	481,000	481,000	481,000	411,000	2,252,000
	소 계	189,000	193,000	193,000	193,000	193,000	961,000
의존	보조금	189,000	193,000	193,000	193,000	193,000	961,000
재원	지방교부세						
	소 계	209,000	288,000	288,000	288,000	218,000	1,291,000
자체	지방세	209,000	288,000	288,000	288,000	218,000	1,291,000
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창 원 시 의 회



수신 창원시장(기획관)

(경유)

제목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관련 검토의견 조회 송부(전홍표 의원)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등)에 의거 해당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2022. 1. 24.(월)**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O 협의사항 :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의 저촉 여부, 재정 부담 등
- 조례안 개요

조 례	안	발 의 자	상 정 시 기
창원시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전홍표 의원	제11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붙임 창원시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1부. 끝.



주무관 유혜리 입법지원담당 이행정 의회담당관 최진호

협조자 건설해양농림 **정회교** 전문위원

시행 의회사무국-306 (2022. 1. 10.) 접수

우 5143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용호 / http://council.changwon.go.kr/

전화번호 055-225-5373 팩스번호 055-225-4743 / hyeri0815@korea.kr / 비공개(5)

## 붙임

## 검토의견 조회안

## 창원시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2. . . 발 의 자 : 전홍표 의원

## 1. 제안이유

최근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가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농업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다.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마.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바.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창원시 조례 제 호

## 창원시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 4.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 5.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 6. "신소득작물" 이란 아열대작물 또는 기후변화에 따라 재배 적지(適地)의 이동으로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작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농촌이 기후 위기 대응 및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고, 새로운 농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창원시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본방향
  - 2. 온실가스 감축 정책
  - 3. 추진 계획 및 전략
  - 4. 행정적 · 재정적 지원 방안
  - 5. 농촌 지역의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순환 공간 구축 방안
  - 6.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 제5조(사업 지원) 시장은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경영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 2. 신재생에너지 활용
- 3. 질소질 비료 절감
- 4. 농축산 부산물 활용
- 5. 농업 · 에너지 관련 기관 자문
- 6. 온실가스 감축 검증
- 7. 신소득작물 기술의 개발 · 보급
- 8.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홍보·교육) ① 시장은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하고, 농업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홍보와 교육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업 및 에너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8조(포상) 시장은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에 공적이 큰 개인, 기관 및 단체에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